

광주지방법원 2016. 4. 19 선고 2014가단34244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청구]

전 문

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A

변론 종결2016. 3. 29.

판결 선고2016. 4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9,640,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2.부터 2014. 4. 10.까지 연 6%, 2014. 4. 11.부터 2014. 6. 9.까지 연 9%, 2014. 6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9,640,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. 3. 12.부터 2014. 4. 10.까지 연 6%, 2014. 4. 11.부터 2014. 6. 9.까지 연 9%, 2014. 6. 10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3. 11. 14.경 피고가 유한회사 청두철강에 부담하는 상품판매대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.

○ 보험기간 2013. 11. 14. ~ 2014. 11. 13.

○ 보험가입금액 5,000만 원

○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 지급 시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사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지연손해금 산정

○ 지연손해금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(30일 간) 연 6%, 31일이 되는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(60일 간) 연 9%, 그 다음날부터 연 15%

나. 원고는 피고가 유한회사 청두철강에 상품판매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. 12. 23.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14. 3. 11. 유한회사 청두철강에 49,640,51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. 다.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에 기한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(자백), 갑 제2호증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9,640,5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유한회사 청두철강에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. 3. 12.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2014. 4. 10.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6%, 그 다음날인 2014. 4. 11.부터 60일이 되는 날(2014. 3. 12.부터는 90일이 되는 날)인 2014. 6. 9.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9%, 그 다음날인 2014. 6. 10.부터 피고가 그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. 4. 19.까지 약정지연이자율인 연 15%, 그 다음날인 2016. 4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, 2015. 10. 1.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 법정이율이 2015. 10. 1.자로 15%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그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한윤옥